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. 7. 3 선고 2013가단40402 판결 [(잔부판결) 소유권이전등기
이행청구 등]

재판경과

수원지방법원 2015. 11. 26 선고 2014나32066 판결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. 7. 3 선고 2013가단40402 판결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AR

2. AS

변론 종결 2014. 7. 3.

판결 선고 2014. 7. 3.

주 문

1.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7,538/125,874 지분에 관하여 2007. 7. 27.
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2007. 7. 27. 망 J(이하 '망인'이라고만 한다)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3,769/13,986 지분을 매수하고, 원고, 망인, B 사이의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B 앞으로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는데, 피고들이 2013. 2. 13. 망인의 사망에 따라 각 2/9의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는바, B 명의의 위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고,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인 망인의 소유로 복귀하는데, 매도인인 망인과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,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각 위 각 토지 중 7,538/125,874 지분 $\{= (3,769/13,986) \times (2/9)\}$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강효인

별지